

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면제 신고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2일
신고인	①성명(법인인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)	②생년월일(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)	
	③주소 (전화번호:)		
④건물·시설물의 소재지			
⑤오수발생량(㎥/일) 또는 처리대상 인원(00명용)		⑥오수의 운반·처리방법	[] 자체운반·처리 [] 위탁운반·처리
⑦위탁 운반업체	업체명	⑧위탁 처리시설	처리시설명
	허가번호		소재지
	소재지		

「하수도법」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신청(신고)인 제출서류	오수 운반·처리 계획서	수수료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건축물대장	없 음

작성방법

- ⑤란에서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는 1일 오수발생량을, 정화조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처리대상 인원을 적습니다.
⑥란은 오수를 운반·처리하는 방법을 적는 란으로 자체운반·처리나 위탁운반·처리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.
⑦·⑧란은 오수를 위탁운반·처리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.

처리절차

